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8. 10 최진판의원과 7명

나. 회부일자 : 1994. 8. 10

다. 상정일자 : 제34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운영위원회('94. 8. 18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진판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,317호로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사하구의회의원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비, 현지교통비, 숙박비 및 국외출장여비 등을 실제 소요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현행조례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일 비 : 30,000원 → 50,000원

○ 국내여비 상향조정

현지교통비	의장, 부의장	5,000원 → 6,500원
	의원	4,500원 → 6,500원
숙박비	의장, 부의장	17,000원 → 20,700원
	의원	14,000원 → 16,200원
식탁료 삭제		

○ 국외여비 조정

숙박비	의장, 부의장	40 \$ ~ 100 \$ → 62 \$ ~ 130 \$
	의원	33 \$ ~ 83 \$ → 46 \$ ~ 114 \$
식비	의장, 부의장	33 \$ ~ 53 \$ → 49 \$ ~ 107 \$
	의원	30 \$ ~ 48 \$ → 37 \$ ~ 81 \$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있어서 식탁료를 삭제하는 대신 현지 교통비 및 숙박료를 대폭 인상하였으며, 현행 여행지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등급기준을 삭제하여 동일하게 지급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있어서 의원기준 숙박비는 37%, 식비는 69% 대폭 인상하는 등 의원의 의정활동 및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